

#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

의안 번호	14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(경기~서울)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에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임
- 나. 왕십리역 신설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(RFP)상 기본 정거장(10개)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왕십리역을 비롯한 추가 정거장 신설계획이 KDI 민자적격성 판단결과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'23.7.)를 거쳐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최종 반영되었음
- 추가 정거장(4개) : 왕십리역, 인덕원역, 의왕역, 상록수역
- 다.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왕십리역 신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및 성동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본 협약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편성 및 사업비 부담 등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됨
- 라. 본 협약에 따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왕십리역 신설 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무이거나 예산이 편성된 사무가 아니므로, 「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민간사업자 및 성동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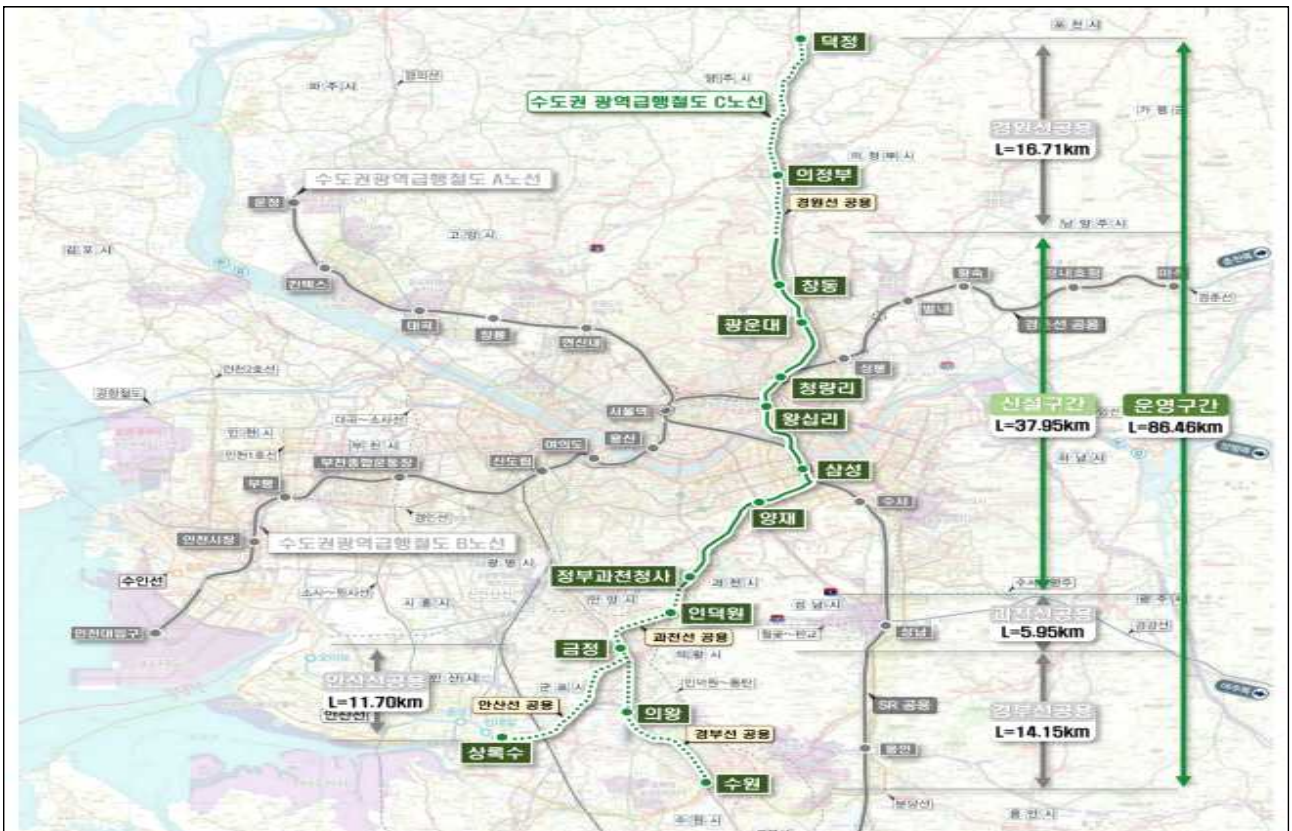
### 가. 사업개요

#### [C노선 전체구간]

- 사업구간 : 경기도 양주 ~ 수원 ※ '23년말 착공 → '28년 준공
- 사업규모 : 연장 86.46km(정거장 14개소(서울6))
- 총사업비 : 4조 6,084억원(건설 5년, 운영 40년)
- 사업시행자 :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※ 대표사 : 현대건설

#### [왕십리역 신설]

- 사업규모 : 지하4층/지상2층, 시설면적 약12,142 $m^2$ (지하)
  - 승강장 규모 : 폭 7.1m, 길이 169.0m
- 총사업비 : 1,879.82억원(사업시행자 50% : 서울시 25% : 성동구 25%)
  - 사업시행자 939.91억원 : 서울시 469.955억원 : 성동구 469.955억원
  - ※ 실시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

## 나. 그간 추진경위

- '20.12.22. : GTX-C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
- '21.05.03. : 왕십리역 추가 건설 재정부담계획 협의 요청(성동구→시)
- '21.05.06. : 왕십리역 신설 자원부담계획 회신 요청(현대건설→시)
- '21.05.12. : 왕십리역 신설 자원부담계획 회신(시·성동구→현대건설)
  - 사업시행자 50% : 지자체 50% (市와 區가 분담) ※ 운영비는 사업자부담
- '21.06.18. : GTX-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현대건설 컨소시엄)
- '21.12.~'23.7. : 왕십리역 신설 자원분담 비율 협의(시↔성동구)
- '23.07.19. :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(안) 통과(기재부)
- '23.08.22. : GTX-C 실시협약 체결(국토부↔현대건설 컨소시엄)
- '23.08.30. : GTX-C노선 왕십리역 신설 관련 의견 회신(성동구→시)
  - '23년 협약체결시점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비율 수용(市50% : 區50%)

## 다. 주요 협약내용

- 협약개요
  - 협약서명 :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서
  - 협 약 자 : 서울특별시 - 성동구 - 사업시행자
  - 협약목적 :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구간 내 왕십리역 설치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
- 주요내용
  - (사업범위) 역사(역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 포함), 전차선, 전력, 통신, 신호, 승강장 등

- (사업 기간)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의 실제 준공일까지
  
- (사업비부담 및 업무분담)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50%, 서울특별시 25%, 성동구가 25% 부담
  - 1. 서울특별시·성동구의 업무
    - 사업민원 및 시공·운영민원 처리 협조
    - 본 사업 시행 관련 담당 인허가 전반(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공사 시행 인허가 포함)에 관한 협조
    - 본 사업의 부지 사용 협조
  
  - 2. 사업시행자의 업무
    -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시행과 각종 인·허가 신청
    - 시공 및 운영민원 처리
    -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업무
  
- (연차별 투자계획) 연차별 공정과 투자계획은 공정률 및 사업비 변경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
  
- (사업시설의 귀속) 본 사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에 귀속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

제21조(수익자·원인자의 비용부담)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(이하 “수익자”라 한다)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# ○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

제82조(철도역의 신설)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1.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

가.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( $R/C \geq 1$ ) :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. 다만,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

나.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( $R/C < 1$ ) :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( $B/C \geq 1$ )되고,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,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('R/C  $\geq 1$ '에 해당하는 금액)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부담하고,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('R/C < 1'에 해당하는 금액)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'

#### 2. 운영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: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( $B/C \geq 1$ ),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허용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간에 재원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을 전제로 한다.

#### 나. 예산조치 : 24년 추경예산 편성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배정근 (☎2133-2238)